

의안번호	2211261
의 퇴 인	강득구 의원
회 답 일	2025.9.15.
추계번호	25B356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5억원, 2031년 15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5억원(연평균 15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4조)	15	15	15	15	15	75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노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2항)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한국어 교육 3. 외국인근로자의 문화행사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제5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평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	• 미대상(제1항, 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노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 추계(제3항, 제7항) － 유사사례를 이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 미대상(제4항~제6항) －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노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지원센터의 개소수 및 지원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평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으로 지정된 지원센터의 규모를 검토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다만, 본 추계서는 2023년까지 추진하였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사업’과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

- － 사업기간: 2023년 말 종료
- － 사업개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의 종합적인 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
- － 지원대상: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¹⁾

- 지원내용
 - (거점) 인건비·사업운영비·사업비 지원
 - (소지역) 상담원 인건비 및 컴퓨터 운영비 일부 지원

[표 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황

연번	센터명		운영기관
1	부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2	대구		대구경영자총협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컨소시엄
3	인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4	광주		광주국제교류센터
5	충남		(사)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6	전북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7	경남	김해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8		양산	(사)희망웅상
9		창원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주: 2025년 7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²⁾]

- 사업기간: 2024년 신규 사업
- 사업개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위한 상담, 지역특화 교육, 지역 산업·고용 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운영 등
-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9개 지방자치단체(인천, 대구, 광주,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충남, 부산, 전북)를 선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당 4억원(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표 3]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 결산액	2022 결산액	2023 결산액	2024 결산액	2025 예산액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7,045	6,893	6,960	—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	—	—	1,708	1,800
합계	7,045	6,893	6,960	1,708	1,800

주: 1.고용노동부는 체류지원 사업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을 종료하고, 2024년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을 추진

2.2021~2023 결산액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고용보험기금)의 실집행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1) 고용노동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4.3

2)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 사업의 내역사업

- (사업대상 규모)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정한 지원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023년 종료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과 2024년 이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천, 대구, 광주,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충남, 부산,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 지원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서울, 대전, 충북, 강원, 경북, 울산, 광주, 전남을 대상으로 함³⁾
- (지원단가) 지원단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거점센터 대상 지원액(57억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개소수(9개소)로 나누어 산출

[표 4] 2023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고용보험기금) 계획액 편성근거

#. 거점센터 운영비: 5,719백만원
-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4,030백만원
* (센터장) 9명 × 3,350천원 × 12월
* (팀 장) 20명 × 3,030천원 × 12월
* (직 원) 102명 × 2,402천원 × 12월
- (운영비) 건물관리비, 공공요금 등 812백만원
* (공공요금) 9개소 × 4,400천원 × 0.84 × 12월
* (자산관리비) 9개소 × 3,300천원 × 0.84 × 12월
* (보안강화) 9개소 × 10,900천원 × 0.84
* (사무용품) 9개소 × 350천원 × 0.84 × 12월
- (사업비) 한국어교육 등 사업비 876백만원
* (한국어반) 9개소 × 25천원 × 105시간 × 12월
* (정보화반) 9개소 × 25천원 × 65시간 × 12월
* (귀국준비) 9개소 × 25천원 × 80시간 × 12월
* (자원봉사자사례비) 9개소 × 40명 × 10천원 × 12월
* (교육운영비) 9개소 × 5천원 × 2회 × 900명
* (농축산·어업 특화센터) 12개소 × 200천원 × 3명 × 0.9 × 12월

자료: 고용노동부

- 본 추계서는 유사사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추진 형태(민간보조)를 토대로 지원하여 지방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3) 세종과 제주를 제외

[표 5]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지원대상(A, 개)	8	8	8	8	8	—	—
지원단가(B, 백만원)	188	188	188	188	188	—	—
추가재정소요(C=A×B, 억원)	15	15	15	15	15	75	15

주: 사업추진체계에 따라 지방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경우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